

<p>안키로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같음하고자 합니다.</p> <p>同僚議員 여러분, 아무쪼록 本議員이 제안 설명하여 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p> <p>○議長 文一權 수고하셨습니다.</p> <p>그러면 文化教育委員會에서 제안한 서울特別市立藝術團體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p> <p>議員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p>	<p>34. 서울特別市地下道商街管理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p> <p>35. 서울特別市道路等主要施設物管理에關한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p> <p>(14時 52分)</p> <p>○議長 文一權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서울特別市地下道商街管理條例案, 의사일정 제35항 서울特別市道路等主要施設物管理에關한條例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p> <p>(議事棒 3打)</p> <p>본 안건의 심사보고는 이미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로 같음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p>
<p>(參 照)</p> <p>서울특별시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p> <p>서울특별시예술단체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2조(종류 및 공연) ①다음 각호의 공연을 위하여 예술단체에는 교향악단·합창단·청소년 교향악단·소년소녀합창단·국악관현악단·가무단·무용단·오페라단 및 극단을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기공연</li> <li>2. 기획공연</li> <li>3. 분수대광장축제(4월~5월, 9월~10월)</li> <li>4. 토요일상설무대</li> <li>5. 지역순회공연</li> <li>6. 해외공연</li> <li>7. 기타공연</li> </ol> <p>②제1항의 공연중 제3호, 제5호의 공연과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은 무료로 개최한다.</p> <p>제4조중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한다.</p> <p>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7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권한중에서 예술단체의 단원 위촉·공연등 운영에 관한 권한을 세종문화회관장에게 위임한다.</p> <p>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參 照)</p> <p>서울특별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안 심사보고서</p> <p>1998년 4월 8일 건설위원회</p> <p>I. 심사경과</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일: 1998년 4월 1일</li> <li>○ 제안자: 서울특별시시장</li> </ul> </li> <li>2. 회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부일: 1998년 4월 2일</li> <li>○ 의안번호: 1151호</li> <li>○ 근거: 의사 13130-138</li> </ul> </li> <li>3. 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정일: 1998년 4월 7일</li> <li>○ 심사: 제103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 수정의결</li> </ul> </li> </ol> <p>II. 제안설명요지(도로국장 임동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안이유             <p>우리 시 지하도에 설치된 상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려는 것임.</p> </li> <li>2. 주요골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상가내 점포의 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안 제4조 및 제5조)</li> <li>(1) 임대 기간: 3년 이내</li> <li>(2) 임차인선정: 공개적인 방법으로 모집·선정 원칙</li> </ul> </li> </ol> </li> </ol>

<p>※ 다만, 우리 시가 관리권을 인수한 후 최초의 임대차계약에 한하여 중전의 임차인을 우선 선정할 수 있음.</p> <p>나. 점포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등 징수 (안 제6조)</p> <p>(1) 임대보증금: 당해 재산평가액의 25퍼센트</p> <p>(2) 임대료: 재산평가액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 시장이 정함.</p> <p>다. 임차권의 양도</p> <p>상가 관리인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함. (안 제8조)</p> <p>라. 임대차계약의 해지(안 제11조)</p> <p>(1) 공공목적의 필요에 의하여 시설물을 시장이 회수하는 경우</p> <p>(2) 90일 이상 임대료 등을 연체하는 경우</p> <p>(3) 임차인의 의무위반 등</p> <p>Ⅲ.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용훈)</p> <p>1. 조례제정 근거 검토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특별시지하도상가는 1970년대부터 지하방공 대피시설로서, 지하보도확보 방안으로서 서울시가 민자유치한 사업으로, 20년간의 무상사용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상가 운영관리권이 이관된 상가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은 타당할 것임.</li> <li>○ 경영관리개념을 도입한 위탁관리와 점포의 임대, 임차인 선정, 임대료 등의 징수,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요율, 임차인의 의무, 행위제한, 계약의 해지 등을 규정한 조례의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있으나 그 내용은 일부 보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li> </ul> <p>2. 조례내용 검토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조(목적)에서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장이 관리하는 지하도에 설치한 상가의 관리”라 하여 “시장이 관리하는 지하도에” “설치한 상가”라면 미인수된 상가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음.</li> <li>○ 제9조(임차인의 의무) 제3항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1조(임대차계약 해지) 제1호, 제5호의 내용과 일부 중복된 부분이</li> </ul> </li> </ul>	<p>있으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9조제3항 및 제11조제1호 사유로 임대자인 서울특별시장이 공공목적의 필요에 따라 임대목적물의 명도를 요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지방재정법 제84조(계약의 해제등)에서 대부재산을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법시행령 제104조(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보상)에 의거 미경과 대부기간에 해당하는 시설비나 그 시설의 이전 또는 이식에 필요한 경비를 기준하여 보상토록 규정하고 있음을 간과하고 있음.</li> <li>· 제9조3항과 제11조1호 내용중 제92조 제3항은 “.....임차인은 30일 이내에 점포를 비우거나 또는 90일 이내에 명도하여야 한다”하고, 제11조제1호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 90일전에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하여 사실상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명도의 요구와 계약의 해지 예정 통보로 인한 해석상 논란을 야기시킬 오해의 소지가 있음.</li> <li>○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례안 제1조(목적) 내용중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지하도에 설치한 상가”를 “관리하는 지하도상가”로 하면 타당할 것임.</li> <li>· 조례안 제9조(임차인의 의무)제3항을 “시장이 공공목적의 필요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점포의 사용제한을 요구하는 때 임차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점포를 비워야 한다”로 하여 일시적인 사용제한만을 규정하고 임차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11조제5호에 의거 계약을 해지하도록 하며,</li> <li>· 제11조제1호를 “시장이 공공목적의 필요에 의하여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고 임대차 목적물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거나 회수하거나 철거가 필요</li> </ul> </li> </ul>
---	---

<p>한 경우”로 구분하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1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제1호의 경우 관리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 90일전에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시장은 임차인의 시설 이전에 필요한 경비를 보상할 수 있다”함으로써 지방재정법 제84조(계약의 해지), 동법시행령 제104조(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보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사비용 등의 손해보상을 추가해야 할 것임.</li> </ul> <p>IV. 질의 및 답변 생략</p> <p>V. 토론요지 생략</p> <p>VI. 소수의견 생략</p> <p>VII. 수정안의 요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발의일자 및 발의자 발의일자: 1998년 4월 7일 발 의 자: 정지홍의원 외 1인</li> <li>2. 수정이유 서울특별시장이 관리하는 지하도상가의 범위가 모호하고 임차인의 의무와 계약 해지 조건의 조항 일부가 중복된 부분이 있으며, 임대자인 서울특별시장이 공공목적의 필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지방재정법 제84조(계약의 해지 등) 동법시행령 제104조(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보상)에 의거 미경과 대부기간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그 시설의 이전 또는 이식에 필요한 경비를 기준하여 보상토록 규정하고 있어 보상규정이 필요하며, 제9조제3항 내용중 30일내 점포를 비우는 사유가 일시적 사용제한임을 명시하여 조례의 자의적 해석이나 오해의 소지를 제거하고자 함.</li> <li>3. 수정주요 골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조중 “지하도에 설치한 상가”를 “지하도상가”로 함.</li> <li>□ 제9조제3항을 “시장이 공공목적의 필요에 의하여 점포의 위치변경 등의 공사를 시행하는 때 또는 점포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거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명도를 요구하는 때에는 임</li> </ul> </li> </ol>	<p>차인은 30일내에 점포를 비우거나 또는 90일내에 명도하여야 한다.”를 “시장이 공공목적의 필요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점포의 사용제한을 필요로 하는 때 임차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점포를 비워야 한다.”로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1조제1호를 “시장이 공공목적의 필요에 의하여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고 임대차 목적물을 회수하는 경우, 이 경우 관리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 90일전에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를 “시장이 공공목적의 필요에 의하여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고 임대차목적물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거나 철거가 필요한 경우”로 함.</li> <li>□ 제11조에 제1항을 두고 제2항을 신설하여 “제1항1호의 경우 관리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 90일전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시장은 임차인의 시설 이전에 필요한 경비를 보상할 수 있다.”로 함.</li> </ul> <p>VIII. 심사결과 수정의결</p> <p>IX.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p> <p style="text-align: right;">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예관조례안 심사보고서</p> <p style="text-align: right;">1998년 4월 8일 건설위원회</p> <p>I. 심사경과</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일: 1998년 4월 1일</li> <li>○ 제안자: 서울특별시장</li> </ul> </li> <li>2. 회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부일: 1998년 4월 2일</li> <li>○ 의안번호: 1156호</li> <li>○ 근거: 의사 13130-138</li> </ul> </li> <li>3. 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정일: 1998년 4월 7일</li> <li>○ 심사: 제103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 수정의결</li> </ul> </li> </ol>
--	--

<p>II. 제안설명요지(도로국장 임동국)</p> <p>1. 제안이유 도시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시가 관리하는 도로 등 주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p> <p>2. 주요골자</p> <p>가. 적용대상 주요시설물(안 제2조) ○ 도로시설물, 자동차전용도로, 공동구, 교통관리시설물, 하천복개구조물, 가로 등, 하수도시설물, 가로수·녹지, 노상주차장, 기타 도로부속물 등</p> <p>나. 각 시설물별 총괄관리자 지정(안 제5조, 제14조, 제17조, 제28조, 제37조, 제43조)</p> <p>(1) 기능 유지관리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관장</p> <p>(2) 지정내용 도로 및 도로시설물, 공동구: 도로국장 교통관리시설물: 교통관리실장 하천복개구조물: 하수국장</p> <p>다. 위탁근거 마련: 다른행정기관, 법인·단체 등에 위탁 가능(안 제5조)</p> <p>라. 시설물별 관리기관 지정(안 별표)</p> <p>(1) 도로 및 도로시설물: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자치구청장, 교량, 터널, 고가차도, 지하차도, 가로등(燈)</p> <p>(2) 하수도 관련 시설: 하수국장, 자치구청장, 차집관거, 하수관거</p> <p>(3) 교통관리 시설물: 교통관리실장, 자치구청장, 도로표지, 무인단속시스템 등</p> <p>(4) 하천복개구조물: 용도별 점용자</p> <p>마. 유지관리(안 제6조 내지 제47조 등)</p> <p>(1) 유지관리계획 수립 - 매 5년마다 유지관리 계획 수립 및 매년 세부 시행계획 수립·시행</p> <p>(2) 순찰, 시설물별 안전등급 부여·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p> <p>(3) 보수보강 공사의 실시 등</p>	<p>바. 비용의 지원(안 제48조) ○ 시설물유지관리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에게 소요비용의 일부지원</p> <p>사. 시행일: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안 부칙)</p> <p>3. 참고사항</p> <p>가. 예산조치: 추후 별도조치</p> <p>나. 합의: 필요 없음.</p> <p>III.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용훈)</p> <p>1. 조례제정 근거 검토 ○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시설물관리조례안은 타당함.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2장 시설물의 안전조치 등 제3장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을 위해 같은법 제2조제4호의 관리주체인 서울특별시가 공공관리주체로서 시설분야별 총괄관리자를 조례로 지정하고자 한 것은 적절한 의견으로 사료됨.</p> <p>2. 조례안 검토보고 ○ 제3조(정의)제3호 내용중 “공동구”의 정의에서 “...도시계획법 제16조에 의거 설치한 시설물...”이라 한 것은 도시계획법 제16조(도시계획 시설의 설치·관리)내용 모두를 포함한 것으로 이해될 것인바 “.....도시계획법 제16조에 의거 공동구로 설치한 시설물.....”로 구체적이어야 함이 타당할 것임. ○ 제3조(정의)제6호중 “.....장비를 설치하여 버스전용차 등에서의 위반차량 등을.....”중 “.....버스전용차 등에서의.....”로 중복되어 있는 표현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조례안 제출부서도 같은 의견이었음. ○ 제3조(정의)에 “하수도시설”용어의 정의가 필요할 것임. 제2조(적용대상 주요시설물) 제7호 “하수도시설물”은 하수도법 제2조(정의)제2호에서 “.....하수도라 함은 하수를 배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거·하수종말처리시설, 기타의 공작물과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하였으므로</p>
--	--

<p>그 범위가 광범위하여 본 조례안에서 구하고자 하는 별표 주요시설물 관리 기관 내용중 “하수도(차집관거·하수관거)”내역만을 말하고자 한다면 용어의 정의가 필요할 것이므로 제3조(정의)에 “제10호를 신설하여” “10. 하수도시설물 이라 함은 별표에서 말하는 차집관거와 하수관거를 말한다.”로 함이 타당할 것임.</p> <p>○ 제5조(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총괄관리자 등) 내용중 제14조(자동차전용도로의 총괄관리자) 내용중 제17조(공동구의 관리) 내용중 제28조(교통관리시설물의 총괄관리자 등) 내용중 “……관리에 관한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을……”이라 하여 文語的 표현상 “관한”용어가 중복된 부분을 “……관리에 관한 제도 및 정책사항을……”로 하는 것이 보다 좋을 것으로 사료됨.</p> <p>○ 제37조(하천복개 구조물의 총괄관리자 등) 제1항중 “……하천복개구조물(이하 “복개구조물”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게 한다”는 제5조, 제14조, 제17조, 제28조 내용과 같이 총괄관리자의 업무에 관한 내용이므로 그 뜻을 동등하게 하여 “……하천복개구조물(이하 “복개구조물”이라 한다)에 관한 제도 및 정책사항을 관장하게 한다”로 함이 타당할 것임.</p> <p>○ 제43조(총괄관리)를 제43조 “(가로등의 총괄관리자 등)으로 하고 “……가로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함도 제37조 수정사유와 같이 “……가로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제도 및 정책사항을 관장하게 한다”로 함이 타당할 것임.</p> <p>○ 제12조(보수·정비등의 실시)제2항 내용중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지체없이 특별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보수·사용금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본 조례안 제4조제4항중 시설물의안전관리에 관한특별법 제14조(사용제한 등)를 지</p>	<p>청하는 것으로 이해될 것이며, 그 내용은 관리 주체가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있거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만을 규정하고 있어 “……특별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보수……”라 함은 적절하지 못하므로 “……지체없이 개별법령 및 특별법 규정에 의한 보수·보강 사용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로 함이 타당할 것임.</p> <p>○ 제3장 자동차전용도로 및 제4장 공동구에서 제15조(자동차전용도로의 관리 및 위탁)제1항과 제17조(공동구관리) 제4항 내용은 자동차전용도로의 녹지, 가로수, 도로표지, 가로등, 청소관리와 공동구 관리를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바, 제5조(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총괄관리자 등) 제2항 및 제28조(교통관리시설물의 총괄관리자 등) 제3항 내용과 같이 “……관리를 다른 행정기관·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제15조(자동차 전용도로의 관리 및 위탁)제1항중 “……녹지·가로수·도로표지·가로등 및 청소는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한다”는 “……가로등 및 청소는 다른 행정기관·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같은조 제2항의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는 “……위탁을 받은 자에 대하여……”로, 제17조(공동구의 관리) 제4항중 “……공동구 본체와 부대시설의 유지관리 및 비용정수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한다”는 “……유지관리 및 비용정수를 다른 행정기관·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p> <p>○ 제23조(공사등의 승인) 제3항 “제1항의 공사시행 점용자는 다른 점용자의 점용시설 등에 지장을 줄 경우 관련 점용자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공사시행 점용자에게 관련 점용자와 상호협의를</p>
--	---

지시할 수 있다”로 한 것을 “……지장을 줄 경우……”는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로, “……관련점용자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공사시행 점용자에게 관련 점용자와 상호협의를 지시할 수 있다”는 “……관리점용자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로 하고, 이하를 삭제하여 공사승인 신청 이전에 당사자간 협의를 끝마치도록 규정하고, 관리기관의 장이 당초부터 점용자간의 분쟁에서 벗어나 관리기능으로서의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제28조(교통관리시설물의 총괄관리자 등) 제2항 내용중 “……도로표지·교통관리시스템·무인단속시스템 등 교통관리시설물의 설치·안전 및 유지관리는 별표에서 정한 관리기관의 장이 이를 시행한다”하였으나 조례안 제19쪽 별표 주요시설물 관리기관 구분란에 “자동차 전용도로”만을 규정하고 일반도로의 교통관리시스템 관리기관이 누락되어 있어 보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제36조(무인단속시스템 설치지점의 도로공사 등)중 “……도로의 굴착, 점용을 허가(또는 신고수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부서의……”는 제36조이후 관계조항이 없어 “또는”과 “이하 같다”를 삭제하고 “도로굴착점용을 허가(신고수리를 포함한다)하는 부서의……”로 함이 가할 것임.

○ 제37조(하천복개구조물의 총괄관리자 등) 제2항중 “복개구조물에 설치한 건축물·장비……”는 복개구조물에 가장 많이 설치된 “도로”가 누락되어서는 안 될 것이므로 “복개구조물에 설치한 도로·건축물·장비……”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임.

○ 제38조(복개구조물의 안전점검등) 제3항은 그 내용상 제39조(시설물의 순찰등)에 두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종합의견

○ 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안은 서울특별시가 관리하는 주요시설물의 관리책임 한계를 구분하고 도시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시민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통합관리 개념을 구체화한 것으로 오래 전부터 준비되어 있어야 할 조례라고 사료됨.

○ 시장이 제출한 조례초안은 부서간의 이해와 책임한계로 미루어 보아 논란이 있을 것으로 관측되며, 조례시행으로 인하여 조례제정 전보다 행정력이 낭비되거나 불필요한 절차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분석과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조례안 검토내용과 같이 수정한다면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IV. 질의 및 답변

생략

V. 토론요지

생략

VI. 소수의견

생략

VII. 수정안의 요지

1. 발의 및 발의자

발의일: 1989년 4월 8일

발의자: 백남선의원 외 1인

2. 수정이유

시설관리수탁자를 지방공단에 국한하고 있는 불공정 부분이 있으며, 공동구의 경우 관련점용자간의 마찰이 예견되는 사항을 사전에 당사자끼리 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할 부분과 복개물에 설치한 시설중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가 누락되어 있으며, 사용제한 등의 조치부분이 다른 조항에 분산되어 있는 등 조례의 구조, 용어 사용의 일관성 결여, 관련법 규정의 구체성과 적용의 모순을 바로잡기 위해 수정하려는 것임.

3. 수정주요골자

○ 제3조제3호중 “설치한”을 “공동구로 설치한”으로 함.

○ 제3조제6호중 “버스전용차 등에서의 위반차량 등을”을 “위반차량 등을”로 함.

○ 제3조제10호를 신설하여 “하수도시설물”

<p>이라 함은 별표에서 말하는 차집관거와 하수관거를 말한다“로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5조제1항중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을 “제도 및 정책사항”으로 함.</li> <li>○ 제12조제2항중 “특별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보수·사용금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를 “개별법령 및 특별법 규정에 의한 보수·보강·사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로 함.</li> <li>○ 제14조제1항중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을 “제도 및 정책사항”으로 함.</li> <li>○ 제15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하 “시설관리공단”이라 한다.)에 위탁관리한다”를 “다른 행정기관·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하고, 제15조제2항 중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로 함.</li> <li>○ 제17조제1항 중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을 “제도 및 정책사항”으로 하고, 제17조제4항중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한다”를 “다른 행정기관·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함.</li> <li>○ 제23조제3항중 “지장을 줄 경우 관련 점용자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공사시행 점용자에게 관련 점용자와 상호협의를 지시할 수 있다.”를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관련점용자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로 함.</li> <li>○ 제28조제1항 중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을 “제도 및 정책 사항”으로 한다.</li> <li>○ 제36조 중 “(또는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신고수리를 포함한다)”로 한다.</li> <li>○ 제37조제1항중 “관한 사항을 총괄하게 한다”를 “관한 제도 및 정책사항을 관장하게 한다”로 하고, 제37조제2항중 “설치한 건축물”을 “설치한 도로·건축물”로 함.</li> <li>○ 제38조제3항을 삭제함.</li> <li>○ 제39조제3항을 신설하여 “총괄관리자는 하천기능의 유지를 위하여 점용자에게</li> </ul>	<p>소관 시설물의 사용제한·사용중지·철거·보수공사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로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43조중 “제43조(총괄관리)를 “제43조(가로등의 총괄관리자 등)”으로 하고 “사무를 총괄하게 한다”를 “제도 및 정책사항을 관장하게 한다”로 함.</li> <li>○ 별표 본문 중 자동차전용도로 관리기관의 장 “건설안전관리본부(시설관리공단 위탁)”를 “건설안전관리본부장”으로 함.</li> </ul> <p>VIII. 심사결과 수정의결</p> <p>IX.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p> <p>.....</p> <p>○議長 文一權 그러면 서울特別市地下道商街管理條例案 등 2건의 조례안을 建設委員會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p> <p>議員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p> <p>.....</p> <p>(參 照)</p> <p>서울특별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p> <p>서울특별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p> <p>안 제1조중 “지하도에 설치한 상가”를 “지하도상가”로 한다.</p> <p>안 제9조제3항중 “점포의 위치변경 등의 공사를 시행하는 때 또는 점포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거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명도를 요구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30일 이내 점포를 비우거나 또는 90일 이내에 명도하여야 한다.”를 “일시적으로 점포의 사용제한을 필요로 하는 때 임차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점포를 비워야 한다.”로 한다.</p> <p>안 제11조제1호중 “회수하는 경우, 이 경우 관리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 90일전에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거나 철거가</p>
---	--